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16.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7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5. 23.
4. 회부일자 : 2025. 5. 29.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지출내역 :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7개 사업, 총 10건

(단위: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20,000,000	6,379,661	5,114,136	0	1,265,525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주요내용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용결정액 63억 8천만원 중 지출액은 51억 1천 4백만원(80.2%), 집행잔액은 12억 6천 6백만원(19.8%)원임.

2. 검토의견

가. 총괄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0억원으로 총 10건의 사업에 63억 8천만원을 사용결정하여 51억 1천 4백만원(80.2%)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19.8%인 12억 6천 6백만원임.

나. 지출결산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1)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것으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됨.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재정법」 제43조²⁾).

- 2024회계연도의 예비비 예산액(200억원)은 전년도 예산액(200억원)과 동일하며, 사용결정액(63억 8천만원)은 전년도(160억 7천 3백만원) 보다 △96억 9천 3백만원(△60.3%) 감소하였고, 지출액(51억 1천 4백만원)은 전년도(152억 7천 8백만원) 보다 △101억 6천 4백만원(△66.5%)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12억 6천 6백만원)은 전년도(5억 3천 4백만원) 보다 7억 3천 2백만원(19.8%) 증가하였음.

- 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은 소충에 따른 보전금 2건(1억 8백만원, 1.7%), 학교시설환경개선 4건(13억 9천 3백만원, 21.8%), 교육감 궐위에 따른 선거관리 및 정책 관련 비용 2건(24억 2천만원, 37.9%), 코로나 대응 관련 1건(24억 5천만원, 38.4%), 집회 참여 응급처치반 운영 관련 비용 1건(1천 1백만원, 0.2%) 등 총 10건이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위험시설의 예방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1]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4	20,000	10	6,380	5,114	0	1,266
2023	20,000	25	16,073	15,278	261	534
증감	0	△15	△9,693	△10,164	△261	732

가) 일반예비비 사용 내역

[표-2] 일반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4	10,000	8	3,107	2,021	0	1,086
2023	10,000	17	13,054	12,623	0	431
증감	0	△9	△9,947	△10,602	0	655

○ 2024회계연도의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100억원)과 동일하며, 사용결정액(31억 7백만원)은 전년도(130억 5천 4백만원)보다 △99억 4천 7백만원(△76.2%), 지출액(20억 2천 1백만원)은 전년도(126억 2천 3백만원)보다 △106억 2백만원(△108.7% ???)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10억 8천 6백만원)은 전년도(4억 3천 1백만원)보다 6억 5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처럼 금번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건수와 사용결정액 등이

감소하였고,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집행을 위한 요건에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전체 사용결정액이 31억 7백만원임에 비해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35%에 이를 정도이며, 집회 참여 학생 응급처치반 운영을 위한 예비비는 74.7%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23억 3억 2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13억 5천 5백만원에 불과하고 41.9%인 9억 7천 7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처럼 금번 예비비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실제 지출액 대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초기 예산 추계의 적정성 부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정밀한 사업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3] 일반예비비 불용률

(단위: 천원, %)

소관	과목		사용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세부 사업	목					
합		계	3,107,091	2,020,657	0	1,086,434	35.0
총		무	2,356,515	1,379,494	0	977,021	41.5
	교	원 인 건 비	24,832	24,831	0	1	0.0
		보 전 금	24,832	24,831	0	1	
	선	거 관 리	2,331,683	1,354,662	0	977,021	41.9
		자치단체등이전	2,331,683	1,354,662	0	977,021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87,668	59,442	0	28,226	32.2
		교 육 정 책 기 획 관 리	87,668	59,442	0	28,226	
		운 영 비	86,948	59,262	0	27,686	
		여 비	720	180	0	540	

(단위: 천원, %)

평생진로교육국		10,500	2,660	0	7,840	74.7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기관기본운영비	10,500	2,660	0	7,840	
	운영비	10,500	2,660	0	7,840	
교육시설관리본부		352,408	324,533	0	27,875	7.9
	시설사업운영	72,168	72,167	0	1	0.0
	민간이전	72,168	72,167	0	1	
	시설사업운영	10,740	10,740	0	0	
	보전금	10,740	10,740	0	0	
	학교시설환경개선	87,500	87,500	0	0	0.0
	학교회계전출금	87,500	87,500	0	0	
	학교시설환경개선	182,000	154,126	0	27,874	15.3
	건설비	182,000	154,126	0	27,874	
동부교육지원청		300,000	254,528	0	45,472	15.2
	학교시설환경개선	300,000	254,528	0	45,472	
	건설비	300,000	254,528	0	45,472	

- 한편, 금번 2024년도 일반예비비 사용 사업 중 소송과 관련된 것은 2건으로, ‘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8천 3백만원)과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2천 5백만원) 등 1억 8백만원이 지출되었음.

[표-4] 소송관련 일반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용결정일	사용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24.2.13.	82,908	82,907	1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24.3.22.	24,832	24,831	1
계		107,740	107,738	2

[표-5]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예비비 내역 보고 자료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검토 의견	일 자	금 액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 2023. 11. 3.(금)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점검보수반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9명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	2024-02-13	82,908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검토 의견	일 자	금 액
	자연손해금 지급	울북부지청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 - 2024. 1. 17.(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서 퇴직금 미지급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미 동일 기관에서 같은 형태의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들이 제소한 퇴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3721)에서 청구가 인용된 적이 있어 시정지시에 불복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변제를 통한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		
총무과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2023. 6. 19.(월) 채용 당시 공무원 채용가산점이 소급하여 상실됨에 따라 소급하여 임용취소된 교원이 근로기간(2009. 3. 1. ~ 2019. 8. 1. / 총 3806일 근무) 동안 사실상의 근로 제공의 이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신청 - 2024. 1. 11.(목) 원고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퇴직급여와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이자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안정적인 교육행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	2024-03-22	24,832

○ 그러나 동 사안 2건 역시 지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임.

다만 지난해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이후 이와 같은 지적을 개선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및 소속 행정기관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예비비

로 충당하는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패소를 대비하여 예산 편성 당시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사용 내역

- 2024회계연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100억원)은 전년도 예산액(100억원)과 동일하며, 사용결정액(32억 7천 3백만원)은 전년도(30억 1천 9백만원) 보다 2억 5천 4백만원(8.4%), 지출액(30억 9천 3백만원)은 전년도(26억 5천 5백만원) 보다 4억 3천 8백만원(16.5%), 집행잔액(1억 7천 9백만원)은 전년도(1억 3백만원) 보다 7천 6백만원(73.8%) 증가하였음.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2억 6천 1백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음.

[표-6] 목적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4	10,000	2	3,273	3,093	0	179
2023	10,000	8	3,019	2,655	261	103
증감	0	△6	254	438	△261	76

- 목적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2건이며, 지출액(30억 9천 3백만원) 중 78.1%(24억 1천 8백만원)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예산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였음. 이는 2024년 8월에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3,268억원)가 편성되는³⁾ 등 당시 코로나19의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하였는바, 재난·

3) 관계부처합동(2024.8.19.) 보도자료 참고자료.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 예비비 3,268억원 편성, 이달 내 공급 안정화 예

재해 목적예비비 집행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있습니다.